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07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77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심의결과 입법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조례안 외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심의결과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추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3. 대안의 주요 내용

- 제22조제1항제1호의 “학생”을 “청소년”으로 함.
- 제22조제1항제3호의 “학생”을 “청소년”으로 함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학생”을 “청소년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 중 “학생”을 “청소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표창) ① (생 략)</p> <p>1.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, <u>학</u> <u>생</u>, 노인관련 기관 등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를 한 시민 · <u>학생</u> · 기관 등</p> <p>4~5. (생 략)</p>	<p>제22조(표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청소년</u>----- -----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를 한 시민 · <u>청소년</u> · 기관 등</p> <p>4~5. (현행과 같음)</p>